

학·석사 연계과정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8조의4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개설 학과의 학·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4.11.18.)

제2조(지원자격 및 신청) ①학·석사연계과정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(개정 2014.11.18., 2015.09.22., 2016.11.29.)

1. 5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경우 85학점 이상,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9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, 당해학기까지의 총 성적 평점평균이 3.75 이상이고 7학기 내에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2. 5학기 및 7학기(건축학과)까지의 총 성적 평점평균이 3.5 이상이거나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고 8학기 및 10학기(건축학과) 내에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. 다만, 편입생과 8학기 및 10학기생(건축학과)은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.

②학·석사 연계과정지원서는 매년 6월초와 12월초 소정의 신청기간에 소속 학과장(또는 전공주임)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(선발) ①학·석사 연계과정 모집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개설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성적, 지도교수 추천서 및 면접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선발한 후 결과를 해당 대학과 학사처에 통지한다. (개정 2013.05.31., 2014.11.18, 2015.09.22.)

②학·석사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자가 교환학생 또는 해외수업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6학기 이전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을 종료하여야 학·석사 연계과정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.

제4조(수업년한 및 수강신청) ①학·석사 연계과정의 수업년한은 대학 3.5년(7학기) 또는 대학 4.0년(8학기), 대학원 1.5년(3학기)으로 한다. (개정 2014.11.18.) 단, 건축학과 학·석사 연계과정의 수업년한은 대학 5.0년(10학기), 대학원 1.5년(3학기)으로 한다.(개정 2015.09.22.)

②학·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는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다음 학기부터

2-1-11~2 제2편 학 칙

학부 졸업학기까지 기준학점 외에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
(개정 2014.11.18., 2015.09.22.)

③학·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과목을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다음 학기부터 학부 졸업학기 중에 최대 6학점 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학원 진학시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15.09.22.)

제5조(대학 졸업) ①학·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가 대학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부졸업학기에 학·석사 연계과정 대학 졸업신청서를 소속대학에 제출하고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11.18, 2015.09.22..)

②학·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는 학사학위를 수여 받음과 동시에 학·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최종 선발한다.

③7학기로 졸업하는 학·석사 연계과정생은 학부에서 요구하는 주전공과 복수전공 학과(전공)의 졸업논문과 졸업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. (개정 2014.11.18.)

④학·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, 학·석사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 및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의 학·석사 연계과정은 취소한다.

⑤학·석사 연계과정을 신청한 후 부터 학·석사 연계과정에 의하여 대학원 첫 학기 등록을 할 때까지 학·석사 연계과정에서 탈락 및 취소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학부 4학년 2학기(8학기) 정규등록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학칙 제8조 및 학칙 제31조에 의거 제적 처분한다.

⑥ 학·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는 학부 졸업 시 까지 제2조에서 정한 성적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, 해당 성적 자격요건 미달 시 학석사연계과정 선발 자격을 상실하며 학칙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학부를 졸업하여야 한다. (신설 2015.09.22.)

제6조(대학원 등록 및 입학) ①학·석사 연계과정생은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지도교수를 배정하며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학·석사 연계과정에 의하여 대학원 입학이 허가된 첫 학기와 두 번째 학기에는 군 입대와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휴학이나 자퇴를 할 수 없다.

제7조(대학원 졸업) ①학·석사 연계과정생의 석사학위 취득은 3학기 이수한 자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학위 수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②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점당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4학기 정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의 학칙과 학칙시행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